

「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5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환경과장)

가. 제안이유
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에 대한 시·군별 지원기준이 상이함으로 강원도 내 영농인의 지역별 차등수혜 문제를 해소하여 관내 영농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제재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피해보상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마련(안 제2조, 안 제3조)
- 2)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제외 기준을 마련(안 제5조)
- 3) 농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(안 제9조)
- 4)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체계적인 예방 대책의 보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○ 피해보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,

농작물과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 각기 구체화하였으며,

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사항을 반영하여

포획보상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.

○ 검토결과,

상위법령 및 제도개선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,
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